

# 朝鮮代 度量衡器의 實크기에 관한 研究

田 大 熙

## A Study on the Real Sizes of a Ja, a Doi and a Don in the Time of Chosun Dynasty

*Dae Hi Jeon*

|                       |                      |
|-----------------------|----------------------|
| 〈目 次〉                 |                      |
| 1. 序 論                | 3.2 朝鮮度量器의 實크기       |
| 2. 朝鮮代의 度制와 그 度器의 實길이 | 4. 朝鮮代의 衡制와 한돈중의 實무게 |
| 2.1 朝鮮代의 度制變遷         | 4.1 朝鮮代의 衡制와 葉錢      |
| 2.2 文獻圖尺과 度器의 實길이     | 4.2 朝鮮代의 葉錢重量과 한돈중   |
| 3. 朝鮮代의 量制와 그 量器의 實크기 | 5. 結 論               |
| 3.1 朝鮮代의 量制變遷         |                      |

### Abstract

This paper studied on the length of a Ja, the volume of a Doi and the weight of a Don in the time of Chosun Dynasty.

The following results are deducible from them:

1. The length of a Youngjo-Ja, which least changed of all JAs, changed from 27.6cm at the 28th year of King Sejong to 30.3cm at the 6th year of Kangmu, though it was 29.8cm once through this period.
2. The volume of a Mal(10 Doi) became more from 4.12l at the 28th year of King Sejong as the length of a Youngjo-Ja was longer, and it became to 23.08l in accordance with the system of Pyongsickwon for a time and to 18.0l at the 9th year of Kangmu.
3. The weight of a Don changed from 2.66g at the 28th year of King Sejong to 3.75g at the 6th year of Kangmu, though it was 2.99g at the ages of King Suckjong~King Youngjo and 3.45g at the age of King Kojong for a time.
4. The size of ordinary a Ja, a Mal and a Don of daily use was fairly different from the original unit.

5. The Youpjeons of Dang-2-Jeon were minted upon base of the unit weight of that time, but the most of Dang-1-Jeon were cast up to the same weight of the Heseo-Jeon at the age of King Sejong.

## 1. 序 論

度量衡(Weight and Measures)이란 漢書 律歷志에 「度」는 長短을 재는 것이고 「量」은 多少를 재는 것이며 「衡」은 權衡(權은 分銅, 衡은 저울질을 뜻함)하는 것, 即 輕重을 저울질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人類初期의 度量衡은, 그 基準이 처음에는 人體의 各部分이었고 이에 이어서 穀物粒에서 求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定說이다. 그 實例를 들면 尺은 손으로 寸數를 재는 象形文字이고 FEET(FOOT)는 발길이, GRAIN은 穀物粒의 重量 등이다. 그러나 社會生活의 發達로 集團規模와 交易範圍가 擴大됨에 따라서 그 基準이 보다 正確하고 客觀性이 있는 竹木이나 金屬片 등으로 變遷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東洋의 尺貫法은 黃河流域에 모여 살던 漢民族이 처음으로 創制하였고 西洋의 FEET-POUND法은 古代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에서 發生되어 發展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의 度量衡制度는 古代中國에서 傳來되어 發展하였고, 日本制度<sup>1)</sup>는 三國時代에 우리나라에서 傳播되어 發展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度量衡器가 어느 때부터 使用되었는가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나 三國史記의 百濟 東城王 22(500)年の 記事, 三國遺事의 善德王 12(643)年の 記事 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度量衡制度가 三國時代 以前에 이미 確定되었는 것 같고, 그것은 唐의 制度와 같았을 것<sup>2)</sup>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 이 制度가 高麗代까지 어떻게 發展하였는가도 역시 잘 모르겠으나 高麗史에 다음과 같은 記事가 있다.

高麗史의 食貨志<sup>3)</sup>에는 文宗 23(1069)년에 量田步數를 定하였는데 田1結은 方33步(6寸爲1分, 10分爲1尺, 6尺爲1步\*1), 2結은 方47步, 3結은 方57步3分, ……5結은 方73步8分, …10結은 方104步3分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또 高麗史의 刑法志<sup>4)</sup>에는 文宗 7(1053)년에 官斛規格이 米斛은 長廣高을 1尺2寸(1,728立方寸), 稗租斛은 1尺4寸5分(3,048.6立方寸), 末醬斛은 1尺3寸9分(2,685.6立方寸), 大小豆斛은 1尺0寸9分(1,295.0立方寸)으로 定하여 있다.

朝鮮初에는 周尺\*2의 길이 조차도 確實치 않았으므로 太祖 2(1393)年<sup>5)</sup>에는 判中樞院事 許稠를 시켜서 尺度를 校正하게 하였고, 世宗 28(1446)年 9月<sup>6)</sup>에는 12律의 基本音인 黃鍾律를 내는 正確한 黃鍾管笛을 만들고 그 길이를 基準으로 해서 營造尺\*3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黃鍾尺, 造禮器尺,

\*1. 高麗 文宗 7年の 斗斛規定에는 길이 單位의 크기 順이 分寸尺으로 되어 있으나, 同 23年の 量田步數에서는 寸分尺順으로 되어 있다. 後者의 寸分尺順은 16年 사이에 變更되었다가 그 後에 다시 前者로 還元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 中國과 日本에도 그러한 例가 안 보이며 高麗史의 다른 部分에도 誤字가 있는 點으로 보아서 原記錄의 單位가 잘 못된 것 같다.

\*2. 周尺은 中國의 周代尺으로서 傳來되어 온 東洋의 옛 標準尺이고 田地의 丈量里數의 表示나 天文儀器의 製作, 儀式用으로 많이 使用되었던 자이며, 5周尺 1量地尺이다. 이 자는 時代와 地域에 따라서 差가 크다.

\*3. 營造尺은 量器, 軍器, 船舶, 家屋, 城塞 등의 製造나 修築에 쓰였으며, 造禮器尺은 喪衣, 葬具, 冠婚의 用具를 만들 때 使用하였다.

周尺, 布帛尺 등을 銅으로 原器를 만들어서 各地方廳에 보내어 標準尺으로 利用하게 하였으며, 이 制度가 經國大典[睿宗 1(1469)년에 完成]에 의해서 公高히 法制化되었다. 그러나 壬辰·丙子の 두 차례의 큰 戰亂에 의해서 金屬製 基準尺(原器)이 모두 流失됨에 따라서 度量衡制度가 다시 廢絶하게 되었으므로 肅宗 41(1715)年 2月<sup>9)</sup>에는 戶曹에 命해서 銅으로 新原器를 만들어서 各道에 보냈다.

英祖 16(1740)年<sup>7)</sup>에는 三陟府所藏의 世宗代布帛尺[脊面에 正統 11(1446)年 12月 詳定新造 布帛尺이라는 銘文<sup>8)</sup>이 있음]이 發見됨으로써 다시 度量衡制度를 世宗代 것으로 再整備하였고, 英祖 20(1744)년에는 續大典을 刊行해서 違令時 處罰한다고 規定하였다.

光武 6(1902)年 7月<sup>9)</sup>에는 勅令에 따라 宮內府官制中新에 平式院을 設置하고 內部大臣 李載完을 總裁로 任命해서 度量衡規則의 名稱과 命位를 우리 固有의 것에 日本制度를 加味한 折衷法으로 制定하게 하였다. 또 이와 別途로 平式院製造所를 만들어 度量衡器의 製造와 檢定을 담당하게 하였다. 光武 8年 1月<sup>9)</sup>에는 官制改定에 따라 平式院이 農商工部의 一課로 되고 同製造所도 同部의 監督下에 들어갔으며, 光武 9年 3月<sup>9)</sup>에는 新度量衡法(從前法\*4)을 公布하여 그 名稱과 命位를 더욱 日本制度에 가깝게 만들어서 京城(現 서울)과 仁川에 試驗的으로 施行하였다. 이 制度는 光武 11년에 大邱, 晉州, 平壤에, 光武 12년에는 群山, 木浦, 鎭南浦 등의 14個 地域에 擴大해서 實施되었으며, 그 結果가 좋았으므로 隆熙 3(1909)年 9月에는 이것을 所謂 新度量衡法으로 改定<sup>9)</sup>하기에 이르렀다.

朝鮮代 度量衡器의 實치수에 대해서는 朴의 研究<sup>10)11)12)</sup> 外에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이것은 主로 朝鮮代의 建築物과 石造物에 의해서 營造尺 한자의 實길이를 求하였고, 黃鍾律管을 만들어서 그에 들어가는 물무게에서 한돈, 一斤의 實무게를 求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精度는 全혀 알 수 없고 이들의 量이 全朝鮮代를 통해서 어떻게 變하였는지도 全혀 알 수가 없다.

本稿는 經國大典<sup>13)</sup>, 四千年文獻通考<sup>5)</sup>, 度量衡衍義<sup>1)</sup> 등에 記載된 朝鮮代 諸尺의 相對的 길이와 喪禮備要<sup>14)</sup>, 四禮便覽<sup>15)</sup> 등에 登載된 同 圖示諸尺의 實長과 現存하는 同諸尺의 實長 등을 相互 比較해서 朝鮮代 諸尺의 相對的 길이가 어떻게 變遷하였고 그 諸尺의 實長이 얼마인가를 調查 研究하였으며, 이것에 의해서 朝鮮代 量器의 實크기를 알아 보았다. 또 葉錢의 重量은 그 發行當時의 單位 무게와 密接한 關係가 있다는 點에 着眼해서 朝鮮代의 한돈, 한兩 등의 實무게를 求하였다.

## 2. 朝鮮代의 度制와 그 度器의 實길이

### 2.1 朝鮮代의 度制變遷

朝鮮初에 周尺은 모두 家禮에 실린 司馬公의 石刻本<sup>5)16)</sup>에 의존하였으나 그 板本이 낡아서 差誤가 많았다(表2 參照). 그러므로 太祖 2(1393)년에 判中樞院事 許稠로 하여금 陳理家藏의 周尺을 얻어서 元時院事 金剛의 象牙周尺과 家禮周尺을 參考로 하여 周尺을 校正해서 度制를 整備하게 하였고 이것으로써 道路里數, 射擊場步法, 儀象, 圭表에 이르는 길이의 基準으로 삼았다. 그 周尺의 길이는

\*4. 從前度量衡法(從前法)은 光武 9년부터 試用되었고 隆熙 3년에 正式으로 改定된 新度量衡法으로서 現行 度量衡法(現行法)에 대한 命名이다. 現行法 1尺(現行尺)은 從前法과 같이 30.3cm이나 現行法 1升(現行升)은 從前法 1升(從前升)이 1.8ℓ인데 대해서 2.0ℓ이다.

다음<sup>5)</sup>과 같았다.

$$\begin{aligned} 1周尺 &= 6寸黃鍾尺 = 6寸6分3厘營造尺 = 7寸3分造禮器尺 \\ &= 7寸0分9縱黍尺 = 7寸8分9厘橫黍尺 \dots\dots\dots(1) \end{aligned}$$

世宗 28(1446)年 9月에는 黃鍾音을 正確히 내는 黃鍾管笛을 만들어서 度量衡의 基本으로 삼았으며 그 管의 크기<sup>5)</sup>는 黃鍾尺(4·1 參照)으로 管長이 9寸이고 空圍가 9分이며 容積이 810分이고 容黍가 1,200粒이라고 한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10厘=1分, 10分=1寸, 10寸=1尺, 10尺=1丈이고 黃鍾尺基準의 諸尺의 길이<sup>18)</sup>는 다음과\*<sup>5)</sup> 같다.

$$\begin{aligned} 1周尺 &= 6寸0分6厘黃鍾尺, 1營造尺 = 8寸9分9厘黃鍾尺 \\ 1造禮器尺 &= 8寸2分3厘黃鍾尺, 1布帛尺 = 1尺3寸4分8厘黃鍾尺 \dots\dots\dots(2) \end{aligned}$$

이러한 諸尺은 銅으로 만들어서 戶曹(度支部)에 保管하는 한편 各地方廳에도 1件씩 보내어서 尺度를 平校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後의 數次에 걸친 兵亂에 의해서 모두 遺失되고 三陟府의 布帛尺만이 남았으며 度量制度가 廢止하였다. 그러므로 英祖 26年에는 三陟府所藏의 世宗朝布帛尺을 命取하여 時用諸尺度를 校正해서 中外에 頒行하게 하였다. 다음은 이 諸尺의 길이<sup>5)</sup>이다.

$$\begin{aligned} 1黃鍾尺 &= 1尺5寸周尺 = 1尺0寸0分1厘營造尺 = 1尺1寸造禮器尺 \\ &= 1尺1寸5分縱黍尺 = 1尺1寸8分9厘橫黍尺 \dots\dots\dots(3) \end{aligned}$$

高宗 光武 6(1902)年에는 平式院을 設置해서 우리 固有의 度量衡制度에 日本制度를 加味한 折衷法을 制定하였으며, 白金棒의 米突度器原器를 採用하였다. 이 度制는 10毫=1厘, 10厘=1分, 10分=1寸, 10寸=1尺, 10尺=1丈, 1,386尺=1里로 定하였고 西洋(泰西)尺間에는 다음과 같이 規定<sup>5)</sup>하였다.

$$\begin{aligned} 1美利米突(mm) &- 準我 3厘3毫(1營造尺 = 1日本曲尺 = 100/3.3cm = 30.303cm) \\ 10mm &= 1先知米突(cm) - 準我 3分3厘 \\ 10cm &= 1大始米突(dm) - 準 3寸3分 \\ 10dm &= 1米突(m) - 準 3尺3寸 \\ 10m &= 1大可米突(dekam.) - 準 33尺 \\ 10 dekam. &= 1赫得米突(hetom.) - 準 330尺 \\ 10 hetom. &= 1岐路米突(km) - 準 3,300尺 \end{aligned}$$

또 이 折衷法의 測量尺은 10厘=1分, 10分=1周尺, 6周尺=1步, 10周尺=1間, 100周尺=1鍵, 2,100周尺=1里, 30里=1息으로 定하였고 泰西尺 1米突은 準我 5周尺으로 規定<sup>5)</sup>하였다. 따라서

$$1周尺 = 6寸6分營造尺 = 20cm \dots\dots\dots(4)$$

또 이 制度의 地積은 10勺=1合, 10合=1把, 10把=1束, 10束=1負, 10負=1結로 定하였고 泰西地積間에는 다음과 같이 規定<sup>5)</sup>하였다.

\*5. 經國大典 工典 度量衡條의 解說內容이 法制處發行的 大典(1965)이나 一志社發行(1979)의 것이나 李相伯 著의 韓國史에서 모두 黃鍾尺 1尺 = 周尺 0.606尺 = 營造尺 0.899尺 = 造禮器尺 0.823尺 = 布帛尺 1.348尺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1周尺 = 黃鍾尺 0.606尺, 1營造尺 = 黃鍾尺 0.899尺……의 誤記라고 생각된다.

1先知憂(ca)一當我 1把, 100ca=1憂(a, 알)一當我 1負, 100a=1赫得憂(ha)一當我 1結  
 以上の (1)~(4)式을 整理하면 <表 1>로 表示된다.

<表 1> 度 制 의 變 遷

| 時代 (年代)               | 周 尺                          | 黃 鍾 尺                    | 營 造 尺                                  | 造 禮 器 尺                        | 布 帛 尺                      | 縱 黍 尺            | 橫 黍 尺              |
|-----------------------|------------------------------|--------------------------|--|--------------------------------|----------------------------|------------------|--------------------|
| 太祖2年(1393)            | 1尺 =                         | 6寸                       | 6寸6分3厘                                 | 7寸3分                           | —                          | 7寸0分9厘           | 7寸8分9厘             |
| 世宗28年(1446)<br>(經國大典) | 1尺 =<br>1尺6寸5分0厘<br>1尺4寸8分4厘 | 6寸0分6厘<br>1尺 =<br>8寸9分9厘 | 6寸7分4厘<br>1尺1寸1分2厘<br>1尺 =<br>1尺0寸9分2厘 | 7寸3分6厘<br>1尺2寸1分5厘<br>1尺0寸9分2厘 | 4寸5分0厘<br>7寸4分2厘<br>6寸6分7厘 | —                | —                  |
| 英祖26年(1750)           | 1尺 =<br>1尺5寸                 | 6寸6分7厘<br>1尺 =           | 6寸6分7厘<br>1尺0寸0分1厘                     | 7寸3分3厘<br>1尺1寸                 | —                          | 7寸6分7厘<br>1尺1寸5分 | 7寸9分3厘<br>1尺1寸8分9厘 |
| 光武 6年(1902)           | 1尺 =                         | —                        | 6寸6分                                   | —                              | —                          | —                | —                  |

2.2 文獻圖尺과 度器原器의 實길이

朱子家禮(中國 明朝 丘濬編)<sup>16)</sup>와 性理大全書(1415年, 明, 胡廣 등編)<sup>17)</sup> 卷18(家禮1)\*<sup>6)</sup>에는 각각 <寫 1>과 <寫 2>의 司馬公家 石刻本의 圖尺이 있다. 이들에 는 古尺이 當令省尺 5寸5分弱이고 周尺(神主用周尺 亦見 南軒家所刻本)은 當三司布帛尺 7寸5分弱, 當浙尺 8寸4分이며, 三司布帛尺은 比上周尺 更加 3寸 4分, 即 省尺 又名 京尺은 當周尺 1尺3寸4分, 當浙尺 1尺1寸5分이라고 同一한 說明文이 붙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圖尺은 同種이라고 생각되며, 그 圖尺의 實長과 그 相對長의 關係를 求하면 <表 2>와 같다.

<表2> 朱子家禮와 性理大全書의 諸圖尺 길이

| 文 獻 名               | 周 尺                        | 三司布帛尺(省尺京尺)            | 浙 尺                        | 古 尺                            |
|---------------------|----------------------------|------------------------|----------------------------|--------------------------------|
| 朱子家禮와 性理大全<br>書에 共通 | 1尺 =<br>1尺3寸4分<br>(7寸3分6厘) | 7寸5分弱<br>1尺 =<br>5寸5分弱 | 8寸4分<br>1尺1寸3分<br>(6寸2分1厘) | (1尺3寸5分8厘)<br>(1尺8寸2分)<br>1尺 = |
| 朱子家禮 圖尺             | 15.3cm                     | (20.4cm)               | (18.2cm)                   | 15.75cm<br>(11.27cm)           |
| 性理大全書 圖尺            | 17.1cm                     | (22.9cm)               | (20.36cm)                  | 14.7cm<br>(12.59cm)            |

( )는 計算值

喪禮備要(寫3, 1620年 金長生序)<sup>14)</sup>에는 右以正統 11(1446)年 詳定尺樣刻于石이라는 說明과 같이 길이 18.8cm의 周尺, 25.1cm의 造禮器尺, 27.6cm의 營造尺 및 41.8cm의 布帛尺의 4種의 圖尺이

\*6. 朱子學은 宋代의 朱熹에 의해서 大成한 學問으로서 性理學이라고도 하며, 우리 나라에서는 高麗 忠烈王 12(1286)年에 安珊이 처음으로 朱子全書를 中國에서 가져와서 研究하기 시작하였다. 朝鮮年代에 들어와서는 이 思想을 國是로 삼았으므로 크게 發達하였으며, 그 代表的 學者가 李滉과 李珥이다.

朱子家禮는 明代 丘濬이 冠婚喪祭의 四禮에 관한 朱子의 學說을 수집해서 만든 冊이며, 略해서 家禮라고도 한다. 이것은 高麗末葉에 朱子學에 뒤따라서 우리 나라에 수입되었고 朝鮮代에는 朱子學이 國家의 政教綱領으로 確立됨에 따라서 이 家禮는 널리 遵行되었다.

性理大全書는 1415年에 胡廣 등이 明 永樂帝의 勅命에 따라서 엮은 책이며, 周子, 張子, 朱子 등의 性理說과 理氣說은 集錄한 것이다.



있다.

喪祭儀輯錄 書疏式篇<sup>18)</sup>에는 <寫 4>와 같이 19.4cm의 周尺, 26.1cm의 造禮器尺, 27.6cm의 營造尺 및 42.4cm의 布帛尺의 圖尺이 있다.

四禮便覽 卷之5(憲宗 10年—1844年 出版)<sup>15)</sup>에는 20.1cm의 周尺, 27.4cm의 造禮器尺, 29.8cm의 營造尺 및 44.8cm의 布帛尺의 圖尺이 있고, 그 增補版(光武 4年—1900年 出版)<sup>19)</sup>에는 周尺의 길이만 이 20.1cm에서 20.0cm로 줄었고 다른 세가지 차는 같은 길이이다.

高橋 正\*7)著의 度量衡衍義(1922年 出版)<sup>4)</sup>에는 <寫 7>과 같은 20.5cm의 周尺, 30.3cm의 營造尺, 48.8cm의 平布正尺 등의 光武 6年の 改定度器가 5分之1의 縮尺으로 表示되어 있다.

또 高橋 著書<sup>20)</sup>에 의하면 往年에 尺度의 長短을 精査하려고 그 度器原器를 찾아 보니 多幸이도 度支部(戶曹)의 庫底塵中에서 6種의 度器原器가 發見되었으며, 그것을 政府財政廳問部가 調査한 바에 의하면 日本曲尺(Kanesasi: 30.3cm)으로 다음과 같았다. 卽, 周尺은 6寸8分(20.6cm), 造禮器尺은 9寸0分5厘(27.4cm), 營造尺은 1尺(30.3cm), 黃鍾尺은 1尺1寸2分(33.9cm), 布帛尺은 1尺6寸1分(48.7cm), 量地尺은 3尺3寸(100cm)이다. 그리고 全相運 著書<sup>7)</sup>에 의하면 德壽宮에 秘藏되어 있는 銅製黃鍾尺(原器라고 생각됨)의 길이가 34.10cm였다고 하니 周尺은 20.66cm, 營造尺은 30.65cm로 換算된다.

以上の 文献上の 圖尺實長과 度器原器의 實長, 그리고 諸尺의 相互關係를 總括하면 <表 3>와 같이 된다.

光武 5年の 貨幣條例와 同 9年の 同條例 改定件에 의해서 半圓銀貨, 10錢 銀貨 등의 6種의 新鑄

<表 3>

文献圖尺과 度器原器의 實測長 變遷

| 文 献 名           | 周 尺                  | 營 造 尺                                   | 造 禮 器 尺  | 布 帛 尺  |
|-----------------|----------------------|---|--|--|
| 喪禮備要<br>(1446)  | 18.8cm<br>1尺 = /1尺 = | 27.6cm<br>6寸8分1厘/1尺4寸6分8厘<br>1尺 = /1尺 = | 25.1cm<br>7寸4分9厘/1尺3寸3分5厘<br>1尺1寸0分/9寸0分9厘<br>1尺 = /1尺 =   | 41.8cm<br>4寸5分0厘/2尺2寸2分2厘<br>6寸6分1厘/1尺5寸1分4厘<br>6寸0分1厘/1尺6寸6分5厘            |
| 喪祭儀輯錄           | 19.4cm<br>1尺 = /1尺 = | 27.6cm<br>7寸0分3厘/1尺4寸2分2厘<br>1尺 = /1尺 = | 26.1cm<br>7寸4分4厘/1尺3寸4分4厘<br>1尺0寸5分9厘/9寸4分4厘<br>1尺 = /1尺 = | 42.4cm<br>4寸5分8厘/2尺1寸8分3厘<br>6寸5分1厘/1尺5寸3分6厘<br>6寸1分5厘/1尺6寸2分7厘            |
| 四禮便覽            | 20.1cm<br>1尺 = /1尺 = | 29.8cm<br>6寸7分5厘/1尺4寸8分1厘<br>1尺 = /1尺 = | 27.4cm<br>7寸3分4厘/1尺3寸6分2厘<br>1尺0寸8分8厘/9寸1分9厘<br>1尺 = /1尺 = | 44.8cm<br>4寸4分9厘/2尺2寸2分7厘<br>6寸6分5厘/1尺5寸0分3厘<br>6寸1分2厘/1尺6寸3分5厘            |
| 增補四禮便覽          | 20.0cm<br>1尺 = /1尺 = | 29.8cm<br>6寸7分1厘/1尺4寸9分0厘<br>1尺 = /1尺 = | 27.4cm<br>7寸3分0厘/1尺3寸7分0厘<br>1尺0寸8分8厘/9寸1分9厘<br>1尺 = /1尺 = | 44.8cm<br>4寸4分6厘/2尺2寸4分2厘<br>6寸6分5厘/1尺5寸0分3厘<br>6寸1分2厘/1尺6寸3分5厘            |
| 度量衡衍義<br>(1902) | 20.5cm<br>1尺 = /1尺 = | 30.3cm<br>6寸7分7厘/1尺4寸7分7厘<br>1尺 = /1尺 = | —  | 正布正尺(綿布尺 苧布尺)<br>48.8cm( 38.7 36.0 )<br>4寸2分0厘/2尺3寸8分1厘<br>6寸2分0厘/1尺6寸1分2厘 |

\*7. 高橋 正는 1922(大正11年) 當時에 朝鮮總督府 殖産局에서 우리나라의 度量衡關係를 담당하고 있던 實務者였으며, 度量衡法을 普及해서 活用하게 할 目的으로 우리나라 制度를 日本과 中國, 臺灣의 制度와 對比해 가면서 記述한 「度量衡衍義」라는 菊版 500餘面の 著書를 京城에서 發行하였다.

| 原 器 名      | 周 尺            | 營 造 尺            | 黃 鍾 尺            | 造 禮 器 尺          | 布 帛 尺            |
|------------|----------------|------------------|------------------|------------------|------------------|
| 度支部保管度器 原器 | 20.6cm<br>6寸8分 | 30.3cm<br>/日本曲尺= | 33.9cm<br>1尺1寸2分 | 27.4cm<br>9寸0分5厘 | 48.7cm<br>1尺6寸1分 |
| 德壽宮秘藏銅製黃鍾尺 | (20.6cm)       | (30.6cm)         | 34.1cm           | (27.6cm)         | —                |

( )는 計算值

貨가 發行되었다. <表 4>와 <表 5>에는 同條例值<sup>21)</sup>와 貨幣의 實치수(測定值)를 比較하고 있으며, 1曲尺은 30.3cm임을 알 수 있다.

<表 4> 光武5年 貨幣條例-補助貨幣式樣과 實測值(1901)

| 貨幣種類  | 徑 曲 尺 ※1 | 徑 cm ※2 | cm/曲尺  | 量 目 ※1                | 重 量 g ※2 | g/錢                   | 表面狀態 |
|-------|----------|---------|--------|-----------------------|----------|-----------------------|------|
| 半圓銀貨  | 1寸0分2厘   | 3.08    | 30.196 | 3錢5分9厘4毛2(13.478 3g)  | 13.30    | 3.700<br>(3.750)      | 美 上  |
| 20錢銀貨 | 7分4厘     | 2.29    | 30.946 | 1錢4分3厘7毛7(5.391 4g)   | 5.36     | 3.728<br>(3.750)      | 極 美  |
| 5錢白銅貨 | 6分8厘※3   | 1.76    | 25.882 | 1錢2分4厘4毛1(4.665 4g)※3 | 2.23     | 3.792<br>(3.750)      | 美 上  |
| 1錢青銅貨 | 9分2厘     | 2.78    | 30.217 | 1錢9分 (7.128 0g)※4     | 7.00     | 3.684 ※5<br>(3.752)※6 | 美 上  |

<表 5> 光武9年 貨幣條例中 改定件-補助貨幣式樣과 實測值(1905)

| 貨幣種類  | 徑 曲 尺 ※1 | 徑 cm ※2 | cm/曲尺  | 量 目 ※1            | 重 量 g ※2 | g/錢              | 表面狀態 |
|-------|----------|---------|--------|-------------------|----------|------------------|------|
| 10錢銀貨 | 5分8厘     | 1.78    | 30.690 | 7分1厘8毛8(2.695 5g) | 2.67     | 3.715<br>(3.750) | 美 上  |
| 半錢青銅貨 | 7分5厘     | 2.22    | 30.733 | 9分5厘0毛4(3.564 0g) | 3.62     | 3.809<br>(3.750) | 美 上  |

※1 條例值, ※2 筆者實測值, ※3 5錢白銅貨는 條例值와 實品の 치수 相異함.

※4 8.280g는 光武9年 改定件值로 보아서 7.1280g의 誤記임.

※5 實測值에서 計算

※6 量目에서 計算

筆者測定值 平均: 1曲尺=30.576cm(30.30cm의 +0.9%)

1錢重=3.727g(3.75g의 -0.6%)

大韓民國 第5共和國 紀念鑄貨(20,000원, 1000원, 100원)의 許容重量公差=±(2.043~2.083)%이다.

또 高橋<sup>22)</sup>에 의하면 朝鮮末期에 各地에서 使用되던 度器의 길이를 調査하니 <表 6>와 같았다고 하고, 筆者가 수집한 朝鮮代 度器의 길이를 調査하여 보니 <表 7>과 같았다. 여기에서 筆者가 調査한 것은, 布帛尺\*8은 수집품 중에서 눈금이 金屬象嵌된 精巧品 10個에 대한 것이고, 營造尺(T尺)은 全數

<表 6> 朝鮮末期의 通用諸尺 치수(高橋)

| 尺 種 | 周 尺            | 營 造 尺(木尺)     | 絹 尺           | 布 帛 尺         | 量 地 尺          |
|-----|----------------|---------------|---------------|---------------|----------------|
| 最 短 | 6寸4分(19.39cm)* | 1尺(30.30cm)   | 1尺3寸(39.39cm) | 1尺7寸(51.51cm) | 3尺3寸(100cm)    |
| 最 長 | 6寸8分(20.60cm)  | 1尺3分(31.21cm) | 1尺6寸(48.48cm) | 2尺(60.60cm)   | 3尺5寸(106.05cm) |

\* ( )는 30.30cm/尺의 計算值임

8. 當時에 布帛尺의 길이와 거의 같은 다음의 針尺이 많이 通用되고 있었으므로 그것이 布帛尺인가 針尺인가는 斷定하기가 困難하다. 卽, 針尺은 木製 또는 竹製의 私製 裁縫尺이며, 손가락 굵이를 標準으로 해서 눈금을 매긴 것이라고 한다. 이 자는 布帛尺(30.3×1.612=48.8cm) 보다 5분이 길고 曲尺로서 약 1尺6寸6분이므로 30.3×1.66=50.3cm程度이며, 이 40尺이 1咫이다.

〈表 7〉 朝鮮代 通用諸尺 치수

| 尺 種   | 營造尺(T尺)  | 布 帛 尺     |
|-------|----------|-----------|
| 最 短   | 29.9cm   | 51.2cm    |
| 最 長   | 31.9cm   | 53.4cm    |
| 加乘平均長 | 30.7(8個) | 52.1(10個) |

器라고 생각되고 이들에는 1.0%의 差밖에 없으며, 이들의 原器와 度量衡衍義의 圖尺은 同一度器이고 이들의 길이 間에도 0~0.6%의 差 밖에 없다. 따라서 〈表 3〉의 資料는 1.0% 以下の 誤差로서 信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喪禮備要의 圖尺은 「右以 正統 11年……」으로 미루어 보아서 世宗 28年에 正確한 黃鍾音을 내는 黃鍾管笛을 만들고 이것을 基準으로 해서 度量衡制度를 再確立한 當初의 石刻諸尺의 實長을 表示한다고 생각된다.

朱子家禮와 性理大全書의 圖尺은 이들 책의 著作年代를 생각하고 〈表 1〉~〈表 3〉를 比較하면 이 當時의 中國과 太祖 2(1393)年 以前에 우리나라에서 使用되던 자(尺)라고 생각되고 太祖 2年에 許稠로 하여금 度制를 再整備하게 한 緣由를 짐작하게 한다.

喪祭儀輯錄은 發刊年代가 未詳이나 四禮便覽과 同改正版은 各各 1844年과 1900年에 發刊되었으므로 이들 圖尺은 이러한 年代前後에 使用하던 公式度器의 길이를 表示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朝鮮代의 度制는 〈表 1〉과 같이 變遷하였고 그들 度器의 實長은 〈表 3〉 및 〈表 13〉과 같이 漸次로 若干씩 길어졌다고 判斷\*9된다. 그러나 〈表 5〉 및 〈表 6〉와 같이 朝鮮代의 一般市中에 通用되던 度器에는 그 長短差가 營造尺과 같이 3% 程度인 것에서부터 布帛尺과 같이 20% 程度에 달하는 것도 있었다.

또 우리 固有의 度量衡制度에 日本制度가 加味된 折衷法은 前述한 바와 같이 光武 6(1902)年에 平式院을 設置한 後부터라고 하나 〈表 4〉의 光武 5年 貨幣條例의 貨幣치수로 보아서 이 制度는 이미 光武 5년부터 實施되었다고 보는 것이 妥當한 것 같다.

### 3. 朝鮮代의 量制와 그 量器의 實크기

#### 3.1. 朝鮮代의 量制變遷

朝鮮代 初期의 量制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으나 世宗代부터의 制度는 經國大典, 續大典 등에 明文

\*9. 大典會通 解題<sup>33)</sup>에 의하면 營造尺은 光武 6年까지 使用되었으며, 그 길이는 日本曲尺에 비해서 1分이 짧다고 한다. 이것은 當時의 營造尺 길이가 29.8cm(表13 參照)이고 日本曲尺 길이가 30.3cm이므로 前者는 後者에 비해서 正確하게는 1分6厘 程度가 짧으나 大體로 實際와 잘 一致하는 길이이다.

또 畵<sup>34)</sup>에 의하면 世宗 27年(乙丑-1445)에 五禮儀는 上이 五禮의 未備함을 慮하사 許稠, 姜碩德 등에 命하여 洪武舊制와 東國儀禮를 參酌 損益해서 撰著한 것이라고 하니 위의 五禮 圖尺은 黃鍾管을 度量衡의 基本으로 삼았던 世宗 28年(丙寅) 以前의 圖尺이라고 判斷된다. 萬若에 이 造禮器尺이 太祖 2(1393)年에 許稠에 의해서 整備된 圖尺이라고 한다면 이 太祖代의 尺度<sup>35)</sup>는 1周尺=21.097cm, 1黃鍾尺=35.162cm, 1營造尺=31.821cm로 된다.



化되어 있다. 經國大典 工典 度量衡條<sup>13)</sup>에 의하면 量制는 10勺을 1合, 10合을 1升, 10升을 1斗, 15斗를 1小斛(平石), 20斗를 1大斛(全石)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世宗實錄 丙寅(28年) 9月 27日條<sup>23)</sup>와 續大典 工典 度量衡條<sup>24)</sup>에 의하면 諸量器의 長廣高는 <表 8>과 같다고 하였다. 또 六典條例에 의하면 高宗代 量用銅斛<sup>25)</sup>도 <表 8>의 치수의 升, 斗, 小斛 및 大斛의 量器를 만들어서 戶曹에 保管하고 木製로는 3斗와 4斗의 量器를 만들었다고 한다.

<表 8> 世宗實錄上の 諸量器의 크기(營造尺 길이)

| 量 器 種  | 長(寸)  | 廣(寸)  | 高(寸)  | 立 方 寸 |
|--------|-------|-------|-------|-------|
| 合(合)   | 2.00  | 0.70  | 1.40  | 1.96  |
| 升(升)   | 4.90  | 2.00  | 2.00  | 19.6  |
| 斗(斗)   | 7.00  | 7.00  | 4.00  | 196   |
| 小斛(平石) | 20.00 | 10.00 | 14.70 | 2940  |
| 大斛(全石) | 20.00 | 11.20 | 17.50 | 3920  |

光武 6年에는 <寫 8><sup>26)</sup>과 같이 外部는 木製이고 内部는 놋쇠·니켈鍍金製인 平式院 標準量器를 만들었으며, 光武 9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日本式의 新度量衡法(從前法)을 試用함으로써 1升이 64, 827立方分(1.8ℓ)<sup>26)</sup>으로 되었다. 卽 10勺이 1合, 10合이 1升, 10升이 1斗, 10斗가 1石이고 西洋(泰西)量法則과의 間<sup>5)</sup>에는,

- 1先知翊突(*cl*)—準我 5抄5撮4圭
- 10*cl*=1大始翊突(*dl*)—準我 5勺5抄4撮4圭
- 10*dl*=1翊突(*l*)—準我 5合5勺4抄3撮5圭
- 10*l*=1大可翊突(*deka**l*)—準我 5升5合4勺3抄5撮2圭
- 10*deka**l*=1赫得翊突(*hecto**l*)—準我 5斗5升4合3勺5抄2撮4圭

### 3. 2. 朝鮮代 量器(斗斛)의 實크기

世宗代의 營造尺 길이는 <表 3>에서 27.6cm이므로 世宗實錄上の 量器는

$$\left. \begin{aligned} 1斗 &= 196 \times (2.76)^3 \text{cm}^3 = 4.121l = 2升2合9勺(從前升) \\ 1小斛(平石) &= 2,940 \text{立方寸} = 61.814l = 34.356 \text{從前升} \\ 1大斛(全石) &= 3,920 \text{立方寸} = 82.418l = 45.788 \text{從前升} \end{aligned} \right\} \dots\dots\dots (5)$$

또 營造尺 길이가 29.8cm일 때(憲宗~高宗代)는

$$\left. \begin{aligned} 1斗 &= 196 \times (2.98)^3 = 5.187l = 2.882 \text{從前升} \\ 1小斛 &= 2,940 \text{立方寸} = 43.224 \text{從前升} \\ 1大斛 &= 3,920 \text{立方寸} = 57.632l \text{從前升} \end{aligned} \right\} \dots\dots\dots (6)$$

光武6(1902)年의 平式院 標準量器는 <寫 8><sup>26)</sup>에서, 當時의 1營造尺은 30.303cm이므로

$$\begin{aligned} 5合量器 &= 6.9 \times 2.15 \times 2.85 \text{立方寸} = 42.280 \text{立方寸} = 1.176 \text{ 15}l \quad (1升 = 2.352 \text{ 3}l) \\ 7合5勺量器 &= 7.6 \times 2.85 \times 2.9 \text{立方寸} = 62.814 \text{立方寸} = 1.747 \text{ 36}l \quad (1升 = 2.329 \text{ 8}l) \end{aligned}$$

$$1升5合量器=8.2 \times 3.43 \times 4.3立方寸=120.942立方寸=3.364 37l (1升=2.242 9l)$$

平均하면

$$1升=2.303 3l, 1斗=23.083l \dots\dots\dots(7)$$

光武9(1905)년부터 試用한 新度量衡法에 의하면 1升은 64.827立方寸<sup>20)</sup>이고 當時의 1尺은 30.303cm이므로

$$1升=64.827立方寸=9合9勺7抄8撮3圭=1.8l從前升, 1斗=18l\dots\dots\dots(8)$$

그러므로 世宗代 以後의 量器는 平式院의 標準量器가 出現할 때까지 營造尺의 길이의 變遷에 따라서 1斗=4.121l 程度에서 若干씩 커져서 1斗=5.187l로 되었다고 생각되나 舊韓國에 들어와서 日本式과 折衷하면서 急作히 4.5倍나 큰 1斗=23.083l 程度의 量器로 왜 變하였는지 알 수가 없고, 光武 9년부터는 新度量衡法에 따라서 1斗=18l로 바뀌었다.

<寫9-C>는 그 容量과 烙印 혹은 陰刻文으로 보아서 光武 9(1905)년부터 試用하기 시작해서 隆熙 3(1909)년에 確定된 從前法(1升=1.8l)의 量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1)은 乙酉(隆熙 3年)式 雙武先이란 陰刻이 있는 5合量器( $19.1 \times 8.0 \times 5.9cm^3=0.901 52l=0.500 84從前升$ )이고, (2)는 七合五勺, 平 및 二二八七九의 烙印이 있는 量器( $21.6 \times 7.1 \times 8.8cm^3=1.349 57l=0.749 76從前升$ )이며, (3)은 一升五合, 平 및 玖 四七八五九의 烙印이 있는 量器( $23.35 \times 8.9 \times 13.0cm^3=2.701 59l=1.500 09從前升$ )이므로 (1)은 從前法의 私製品이고 (2)와 (3)은 平式院에서 만든 從前法의 官製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高橋<sup>27)</sup>에 의하면 世宗實錄上의 1斗(196立方寸)은 從前升(1.8l)으로 3升0合2勺3抄餘이고, 木製의 3斗量器와 4斗量器의 1斗는 從前升으로 각각 3升5合2勺과 3升6合5勺이며, 甲午(高宗 31—1894年)銅斗는 1斗가 3升6合이라고 하였다. 이 實크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196立方寸의 1斗가 從前升으로 3升0合2勺3抄餘라는 것에서 逆算하면 高橋는 世宗實錄上의 營造尺길이를 30.303cm로 잡고 있다\*10. 그러나 高宗代의 1營造尺 길이는 30.3cm가 아니라 29.8cm이므로 196立方寸의 1斗는 3.023 從前升이 아니라 2.882從前升이고 木製 3斗量器의 1斗는 3.355 8從前升, 4斗量器의 1斗는 3.479 7從前升, 甲午銅斗의 1斗는 3.432 2從前升으로 된다. 따라서 <寫9-D>의 (1)은  $18.0 \times (5.5+6.8) \times 1/2 \times 5.7cm^3=0.630 99l=0.350 55從前升$ 이고, (2)는  $17.4 \times 6.5 \times 6.5=0.723 84l=0.402 13從前升$ 이므로 이들은 平式院量器 以前의 高宗代의 私製 1升量器라고 判斷된다.

<表 9> 朝鮮代 常用量器의 實크기(從前量器)

| 量 器 種 | 升 量 器 | 斗 量 器  |
|-------|-------|--------|
| 最 小   | 3合    | 3升     |
| 最 大   | 3升8合  | 1斗6升8合 |

<寫9-E>의 (1)型에는 다음 치수의 (a), (b), (c)의 量器가 있고 (2)型에는 (d), (e)의 밑이 넓고 위가 좁은 量器가 있다. 特히 (e)에는 倉村, 李承旨宅, 戊申((隆熙 2—1908年) 二月 日의 陰刻이 있다. 그러므로

\*10. 大典會通 解題<sup>33)</sup>에 의하면 日本槓의 1升容量은 650餘立方寸이므로 經國大典의 1小石(15斗)=4升5合餘이고 1大石(20斗)=6升3合餘이라고 하나 世界大百科事典(平凡社)<sup>29)</sup>에 의하면 1升=64.827立方寸(曲尺)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後者의 1升은  $64.827 \times (3.03cm)^3=1.8033l$ 로 된다. 또 經國大典의 1斗는 193立方寸이며, 1寸=3.03cm, 1從前升=1.8l라 하면 1斗=5.452l=3.029 從前升, 1小石=45.436 從前升, 1大石=60.581 從前升으로 된다. 따라서 前者의 升合은 斗升의 誤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世宗代의 1營造尺이 30.3cm라는 근거는 생각할 수도 없다.

이들은 모두 從前法의 私製 半斗容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a)  $25.4 \times 25.9 \times 12.8 \text{cm}^3 = 8.323 \text{l} \approx 4.6$  從前升
- (b)  $25.7 \times 25.7 \times 12.8 \text{cm}^3 = 8.453 \text{l} \approx 4.7$  從前升
- (c)  $26.7 \times 26.7 \times 13.7 \text{cm}^3 = 9.767 \text{l} \approx 5.4$  從前升
- (d)  $[(26+23) \times 1/2]^2 \times 14 \text{cm}^3 = 8.404 \text{l} \approx 4.7$  從前升
- (e)  $(27.3+24.8)(27.5+24.9) \times 1/4 \times 14 \text{cm}^3 = 9.623 \text{l} = 5.346$  從前升

<表 9>는 高橋<sup>28)</sup>가 調査한 朝鮮末期의 常用量器의 容量差이다.

#### 4. 朝鮮代의 衡制와 한돈중의 實무게

##### 4.1 朝鮮代의 衡制와 葉錢

東洋最初의 度量衡制度는 漢書 律歷志에 明記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衡은 銖, 兩, 斤, 鈞 및 石으로 나누며, 黃鍾管에 들어가는 1,200粒의 矩黍(지장 1龠)의 重量을 12銖라 하고 24銖=1兩, 16兩=1斤, 30斤=1鈞, 4鈞=1石이라고 하였다. 또 唐代의 開元通寶의 重量은 2.4銖로 鑄造되었고 이것이 後代貨幣의 基本重量인 1錢(돈)重으로 되었다.<sup>29)</sup>

日本에서는 大寶令(702年)에 의해서 唐制와 같이 矩黍中位의 100粒重量을 1銖로 정하고 그 24銖=1兩, 16兩=1斤 등으로 정하였으며, 무로마치(室町)時代(1338~1573年)부터는 開元錢의 重量을 基準으로 한 匁(돈)와 貫이 사용되었다고 한다.<sup>29)</sup>

우리나라의 葉錢도 太宗 15(1415)年에 唐나라의 5銖錢에 準해서 鑄造하도록 決定된 바<sup>30)</sup>있으며 世宗 5(1423)年 9月에는 唐의 開元通寶에 準해서 10돈중(錢重)을 1兩으로 하고 錢文을 朝鮮通寶로 決定해서 그 해 11月부터 楷書體錢을 鑄造<sup>30)</sup>하였다. 肅宗 4(1678)年 4月에는 常平通寶를 發行하기 시작해서 重量 1錢2分의 初鑄單字錢을 鑄造하였고, 肅宗 5年 9月에는 脊二의 折二錢을 重量 2錢5分으로 鑄造<sup>30)</sup>하였다. 또 英祖 7(1731)年 9月에는 肅宗 21(1615)年 이후 36年間 發行이 中斷되었던 常平通寶를 發行處를 明示한 脊字 二字錢으로 鑄造<sup>30)</sup>하였으며, 英祖 18(1742)年 6月부터는 重量과 品質의 管理手段으로서 脊字 二代身에 千字文을 表示한 것을 發行<sup>30)</sup>하였고, 英祖 28(1752)年 7月부터는 五行(金, 木, 水, 火, 土)과 壬(英祖 28年 壬申)를 脊字로 하는 등 重量 2錢과 1錢8分의 中型錢을 發行<sup>30)</sup>하였다.

우리나라의 衡制度를 살펴보면 世宗 28(1446)年 9月에 12律의 基本音인 黃鍾律을 내는 正確한 黃鍾管笛을 만들고 그에 물을 채워서 그 물무게를 衡의 標準, 卽 黃鍾管의 容水重量을 88分으로 定하였다. 이 衡制는 經國大典에 의해서 法制化되었으며, 10釐=1分, 10分=1錢(돈), 10錢=1兩, 16兩=1斤으로 하였고 大衡은 100斤저울, 中衡은 30斤저울, 小衡은 3斤저울 또는 1斤저울로 하였다.

黃鍾管의 치수는 四千年文獻通考<sup>31)</sup>에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 卽,「黃鍾은 管長이 9寸이고 空圍가 9分이며 空積이 810分이고 容黍가 1,200粒이다. 黃鍾之律은 今樂院에 銅律管 2部가 있으므로 營造尺으로 黃鍾長을 재어 보니 1尺이다. 度尺之制는 營造尺 길이가 黃鍾尺으로 8寸9分9厘이나 이

에 1厘를 더하면 9寸이 되어 便히 잴 수 있다……」 따라서 黃鍾長은 黃鍾尺으로 9寸이고 嚴格하게는 8寸9分9厘이고 營造尺으로 1尺이 된다. 그러므로 黃鍾尺으로 810立方分の 容水重量이 88分(8.8錢)이고 1營造尺=27.6cm(表2 參照)이므로 10°C의 물의 密度를 0.999 73g/cm<sup>3</sup>라 하면 世宗代의 1錢重은 2.662 3g으로 된다.

光武 6(1902)년부터는 平式院을 設置하고 日本法을 加味한 新衡法을 制定하였다. 이 制度는 質量 1,000g의 白金分銅을 改定衡原器로 하고 그 質量의 400分之 15를 한 兩(37.5g)이라 하였으며, 10毫=1厘, 10厘=1分, 10分=1錢, 10錢=1兩, 16兩=1斤이라 하였다. 따라서 西洋衡法間에는 다음 關係<sup>32)</sup>가 있다.

- 1美利久覽(mg) — 當我 2絲7忽
- 10mg = 1先知久覽(cg) — 當我 2毫6絲7忽
- 10cg = 1大始久覽(dg) — 當我 2厘6毫6絲7忽
- 10dg = 1久覽(g) — 當我 2分6厘6毫6絲7忽
- 10g = 1大可久覽(dekag.) — 當我 2錢6厘6毫6絲7忽
- 10dekag. = 1赫得久覽(hetog.) — 當我 2兩6錢6分6厘6毫6絲7忽
- 10hetog. = 1岐路久覽(kg) — 當我 26兩6錢6分6厘6毫6絲7忽

#### 4.2 朝鮮代의 葉錢重量과 한돈중

歷史的인 前節의 考察에 의하면 朝鮮代의 葉錢重量도 그 當時의 單位重量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表 10〉은 朝鮮朝 肅宗代부터 英祖代까지 發行된 常平通寶 當2錢의 美品 以上の 重要葉錢에 대한 實測 平均重量이다. 肅宗 5(1679)년에 發行된 一部の 當2錢은 무게가 2.5錢重, 肅宗5~17年과 英祖 18~28年에 發行된 當2錢은 2錢重, 英祖 28(1752)年 以後의 것은 1.8錢重이라고 할 때 한돈중은 同表와 같이 2.972~3.031g으로서 아주 잘 一致하며 全平均 돈중이 2.991g으로 된다.

〈表 10〉 常平通寶 當二錢 實重量

| 發行年代                     | 葉錢種類                 | 個數 | 表面磨減狀態 | 平均重量(偏差)                      | 1錢重量                   |
|--------------------------|----------------------|----|--------|-------------------------------|------------------------|
| 肅宗 5年<br>(1679)          | 戶二·武二·賑二             | 6  | 美品以上   | 7.445g/2.5錢<br>(-5.61~+4.26)% | 2.978                  |
| 肅宗 5~17年<br>(1679~1691)  | 開二·工二·賑二·海二<br>·戶二   | 9  | "      | 6.061g/2錢<br>(-13.03~+12.54)% | 3.031g                 |
| 英祖 18~28年<br>(1742~1752) | 開·宣·營·摠·統·戶<br>訓一千字文 | 15 | "      | 5.943g/2錢<br>(-9.09~+9.42)%   | 2.972g                 |
| 英祖 28年以後<br>(1752)       | 禁二·營二<br>營·訓一千字文     | 8  | "      | 5.371g/1.8錢<br>(-5.23~+9.29)% | 2.984g<br>(全平均 2.991g) |

〈表 11〉은 朝鮮朝 世宗代부터 高宗代까지 發行된 朝鮮通寶와 常平通寶의 當 1錢中에서 美品 以上の 重要單錢의 實測 平均重量을 調査한 것이다. 世宗 5(1423)년에 發行된 楷書體錢은 唐의 開元通寶에 準하여 10돈중을 한양이라고 해서 朝鮮通寶로 發行하였다고 하며, 이 實測 平均重量이 4.096g

이다. 따라서 當代의 한 돈중은 當1錢 葉錢을 中心으로 하면 4.095g 内外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世宗代에 衡制度를 確立 할 때 黃鍾管의 容水重量을 基準으로 하였으므로 朝鮮通寶의 楷書體錢 重量은 當時의 한 돈중과는 關係없이 唐나라의 開元通寶와 같은 重量으로 發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

英祖代부터 憲宗代까지의 常平通寶 當 1錢은 純祖代의 均字錢과 같이 3.645g의 것도 있으나 大部分이 世宗代의 楷書體錢과 같이 4.0g内外이므로 이러한 葉錢도 當代의 單位重量과는 關係없이 世宗代것과 同一重量의 當 1錢으로 發行된 것에 틀림이 없는 것 같고, 또한 이 當時의 平衡精度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高宗代부터는 무슨 까닭인가는 알 수 없으나 當 1錢 葉錢의 量이 3.45g内外로 바뀌었고 한 돈중의 實重量이 이 程度인 朝鮮代 저울이 많이 現存하므로 이 當時의 한 돈중은 3.45g 程度로 바뀐 것에 틀림이 없다.

〈表 11〉 常平通寶 當一錢 實重量

| 種 類    | 鑄造所         | 發行年代        | 大小型 | 表面磨滅狀 | 數量 | 平均重量g | 備 考  |
|--------|-------------|-------------|-----|-------|----|-------|--|
| 朝鮮通寶   | 楷書體錢        | 世宗5(1423)부터 | ·   | 美上品   | 5  | 4.096 | 世宗 27(1445)年 鑄錢廢止, 世宗 28年 度量衡制 確立, 肅宗 5年 常平通寶 鑄造開始 |
| 常平通寶   | 平字錢         | 英祖 3—1727年  | —   | 準未使用  | 8  | 4.093 |  |
|        | 戶字錢         | " 7—1731年   | —   | 準未使用  | 40 | 4.079 |  |
| ※<br>※ | 營字錢         | " 18—1742年  | 小   | "     | 16 | 4.201 |  |
|        | "           | " "         | 大   | "     | 6  | 4.232 |  |
|        | 摠字錢         | " 33—1757年  | 小   | "     | 60 | 4.170 |  |
|        | "           | " "         | 大   | "     | 60 | 4.130 |  |
|        | 均字錢         | 純祖 2~1807年  | —   | 美上品   | 8  | 3.645 |  |
|        | 禁字錢         | " 23~1823年  | 小   | 準未使用  | 15 | 3.911 |  |
| ※<br>※ | "           | " "         | 大   | "     | 18 | 3.908 |  |
|        | 訓字錢         | " 28~1828年  | —   | "     | 79 | 4.01  |  |
|        | 經字錢         | " 31~1831年  | —   | 美 品   | 3  | 3.84  |  |
|        | 開字錢         | 憲宗 2~1836年  | —   | 美上品   | 40 | 3.96  |  |
| 武字錢    | 高宗 18~1881年 | 小           | "   | "     | 11 | 3.467 | 光武 6(1902)年 日本法 및 미터法 採用(1돈 중=3.75g)               |
|        | "           | "           | 大   | "     | 1  | 3.410 |  |

※ 準未使用品 摠字錢 120個 重量分布

| 小型右日型 | 20個平均重量 | 4.11 | 平均 4.17g | 全平均    | 偏差(+7.6~-5.6)%<br>最高 4.46, 最低 3.90g |
|-------|---------|------|----------|--------|-------------------------------------|
| 小型左月型 | "       | 4.14 |          |        |                                     |
| " 右月型 | "       | 4.25 |          |        |                                     |
| 大型右日型 | "       | 4.13 | 平均 4.13g | 4.145g |                                     |
| " 左月型 | "       | 4.06 |          |        |                                     |
| " 右月型 | "       | 4.21 |          |        |                                     |

〈表 4〉와 〈表 5〉에는 光武 5年의 貨幣條例와 光武 9年의 同改定件의 補助貨幣式樣과 그 實測重量이 表示되어 있다. 이들에서 當時의 한 돈중은 3.75g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12〉는 5개의 朝鮮代 저울에 대해서 각 눈금에 달리는 重量을 調査한 것이다. (A)의 象牙대 貴金屬用 저울은 상당히 눈금이 正確하나 精密用이라고 생각되는 銀象嵌 눈금의 (B) 藥저울이나 (E)



의 象牙裝飾 저울도 普通級의 돌추저울 (C)(D)와 거의 같이 각 눈금에 달리는 重量에 상당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각 눈금에 달리는 重量으로 보아서 (A)(D)(E)는 한돈중 3.45g의 高宗

〈表 12〉 朝鮮代 저울의 달림  
(A) 貴金屬用 象牙대 저울 - 高宗代(3.45g/錢)

|   |     |      |       |       |       |         |
|---|-----|------|-------|-------|-------|---------|
| 前 | 눈 금 | 0    | 1 錢   |       |       |         |
|   | 달 립 | —    | 3.36g |       |       |         |
| 後 | 눈 금 | 1    | 2     | 3     | 4     | 5 錢     |
|   | 달 립 | —    | 6.86  | 10.21 | 14.00 | 17.10g  |
|   |     | 3.42 | 3.43  | 3.40  | 3.50  | 3.42g/錢 |

(B) 銀象嵌 藥저울 - 光武代(3.75g/錢)

|   |     |       |       |       |          |          |
|---|-----|-------|-------|-------|----------|----------|
| 前 | 눈 금 | 0     | 0.5   | 1.0   | 1.5 兩    |          |
|   | 달 립 | —     | 18.7  | —     | 55.75g   |          |
|   |     | —     | 37.4  | 37.2  | 37.17g/兩 |          |
| 中 | 눈 금 | 1     | 2     | 3     | 4        | 5 兩      |
|   | 달 립 | —     | 73.5  | 111.0 | 147.3    | 184.9g   |
|   |     | 37.2  | 36.75 | 36.67 | 36.83    | 36.73g/兩 |
| 後 | 눈 금 | 5     | 10    | 15    | 0        | 20 兩     |
|   | 달 립 | 176.9 | 354.0 | 529.9 |          | 702.45g  |
|   |     | 35.38 | 35.40 | 35.33 |          | 35.12g/兩 |

(C) 돌추 보통저울 - 光武代(3.75g/錢)

|   |     |        |        |         |         |          |
|---|-----|--------|--------|---------|---------|----------|
| 前 | 눈 금 | 1      | 2      | 3       | 4       | 5 斤      |
|   | 달 립 | 609.2  | 1188.2 | 1759.0  | 2351.0  | 2877.9g  |
|   |     | 38.08  | 37.13  | 36.60   | 36.73   | 35.97g/兩 |
| 後 | 눈 금 | 5      | 6      | 8       | 10      | 12 斤     |
|   | 달 립 | 2990.9 | 3696.3 | 4823.95 | 6013.85 | 7122.3g  |
|   |     | 37.39  | 38.50  | 37.69   | 35.59   | 37.10g/兩 |

(D) 銀象嵌대 돌추 보통저울 - 高宗代(3.45g/錢)

|   |     |        |          |        |          |
|---|-----|--------|----------|--------|----------|
| 前 | 눈 금 | 1      | 2        | 3      | 4        |
|   | 달 립 | 537.2  | 1091.75  | 1646.9 | 2202.9g  |
|   |     | 33.58  | 34.12    | 34.31  | 34.42g/兩 |
| 中 | —   | —      |          |        |          |
| 後 | 눈 금 | 10     | 20       | 24 斤   |          |
|   | 달 립 | 5382.1 | 9599.4g  | 0      |          |
|   |     | 33.01  | 30.00g/兩 | 0      |          |

(E) 象牙裝飾 銀象嵌저울 — 高宗代(3.45g/錢)

|   |     |          |         |        |           |        |         |        |        |         |         |
|---|-----|----------|---------|--------|-----------|--------|---------|--------|--------|---------|---------|
| 前 | 눈 금 | 0        | 1       | 2      | 3         | 4      | 5       | 6      | 8      | 10      | 15斤     |
|   | 달 립 | —        | 582.3   | 1143.2 | 1670.9    | 2188.0 | 2247.85 | 3204.7 | 4352.8 | 5400.55 | 8113.6g |
| 中 | 눈 금 | 5        | 10      | 15     | 20        | 30斤    |         |        |        |         |         |
|   | 달 립 | 2885.9   | 5670.55 | 8013.6 | 10440.10g | 0      |         |        |        |         |         |
| 後 | 눈 금 | 20       | 0       | 90斤    |           |        |         |        |        |         |         |
|   | 달 립 | 9565.15g | 0       | 0      |           |        |         |        |        |         |         |
|   |     | 29.89    | 0       | 0      |           |        |         |        |        |         |         |

代 저울 같고 (B)(C)는 한돈중이 3.75g인 光武代 저울이라고 判斷된다.

上述한 것을 總括하면 朝鮮代의 한돈중(錢重)의 實무게는 世宗代에 2.66g程度이고 肅宗~英祖代에 2.99g 程度이며 高宗代에는 3.45g程度이고 光武 5年以後에는 3.75g로 時代에 따라서 者干씩 점차로 增加된 것으로 判斷된다. 그리고 市中에 實際로 通用되던 衡器에는 한 兩, 한 斤 등에 대해서 달리는 重量이 저울에 따라서 差異가 있고, 같은 저울에 대해서도 각 눈금에 따라서 상당히 큰 差가 있다.

### 5. 結 論

朝鮮代의 度量衡器의 實크기에 관한 以上の 研究에서 다음의 結論을 얻었다.

1. 朝鮮代의 1營造尺 길이, 1斗 크기 및 1돈중 무게는 다음과 같이 變遷한 것으로 判斷되며 總括하면 다음 表와 같다.

<表 13> 朝鮮代 度量衡器의 實크기의 變遷

| 年                 | 代 | 1營造尺 길이     | 1 斗 크 기     | 1 돈 중 무게    |
|-------------------|---|-------------|-------------|-------------|
| 世宗 28(1446)年      |   | .....27.6cm | ..... 4.12ℓ | ..... 2.66g |
| 肅宗代~英祖代           |   | ↓           | ↓           | ↓           |
| 憲宗代               |   | .....29.8cm | ..... 5.19ℓ | ..... 2.99g |
| 高宗代               |   | "           | "           | ↓           |
| 光武 6(1902)年(平式院法) |   | .....30.3cm | .....23.08ℓ | ..... 3.45g |
| 光武 9(1905)年(從前法)  |   | "           | .....18.00ℓ | "           |

(1) 營造尺 길이는 다른 자에 비해서 가장 적게 變하였고 그 實길이는 世宗 28年の 27.6cm에서 中年에 29.8cm로 變한 後 光武 6年の 平式院法에 의해서 30.3cm로 變遷한 것으로 생각된다.

(2) 한말(1斗)의 크기는 世宗代의 4.12ℓ에서 자의 길이의 變遷에 따라서 若干씩 增加하다가 平式院 標準量器에서 一時的으로 急作히 23.08ℓ로 되었고 光武 9年の 新度量衡法에 의해서 18ℓ로 줄어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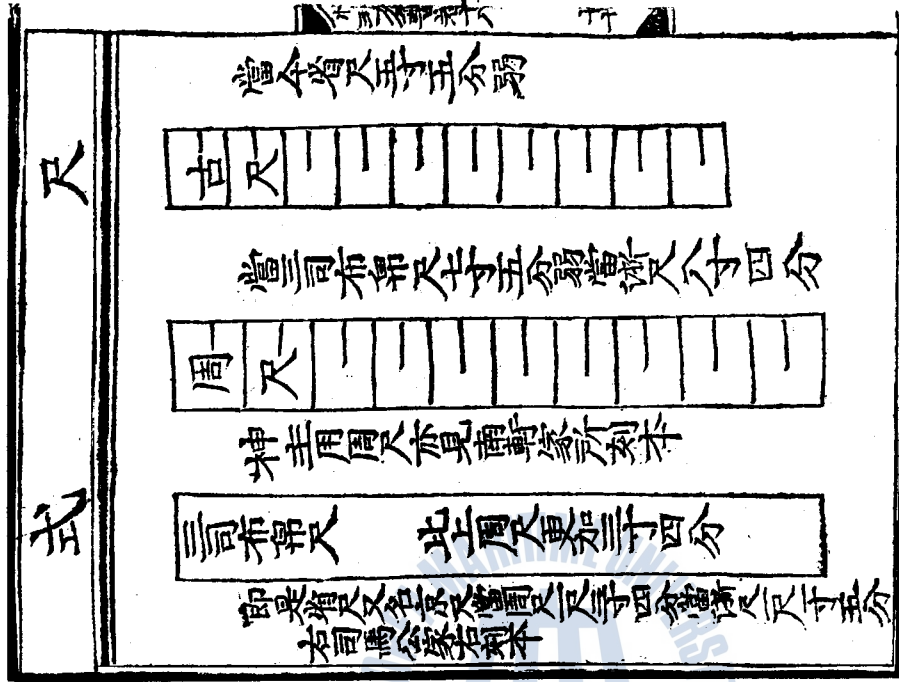
(3) 한돈중(1錢重)의 實무게는 世宗代의 2.66g에서 肅宗~英祖代의 2.99g을 거쳐서 점차로 增加하다가 高宗代에 一時的으로 3.45g로 되었고 光武 6年の 平式院法에 의해서 3.75g로 變遷한 것으로 생각된다.

2. 通用度量衡器의 크기는 그 原器의 크기에 比해서 상당히 큰 差異를 보이는 것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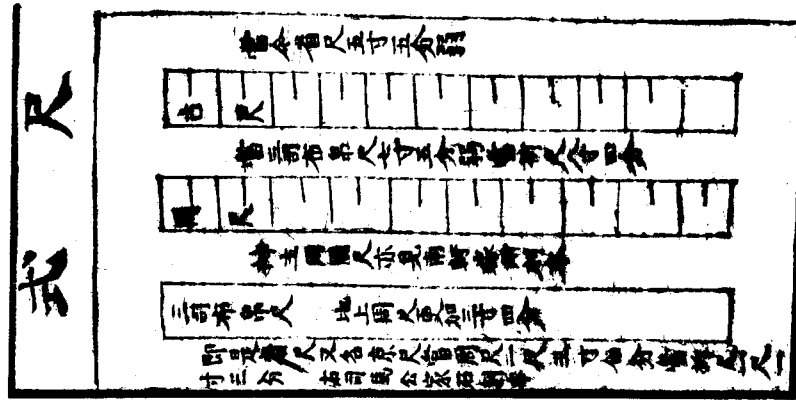
3. 朝鮮代의 葉錢中에서 當2錢은 衡制度의 單位重量과 有關하게 鑄造된 것이 많으나 當1錢은 世宗代의 楷書體錢의 重量과 同一하게 鑄造된 것이 많았다.

### 參 考 文 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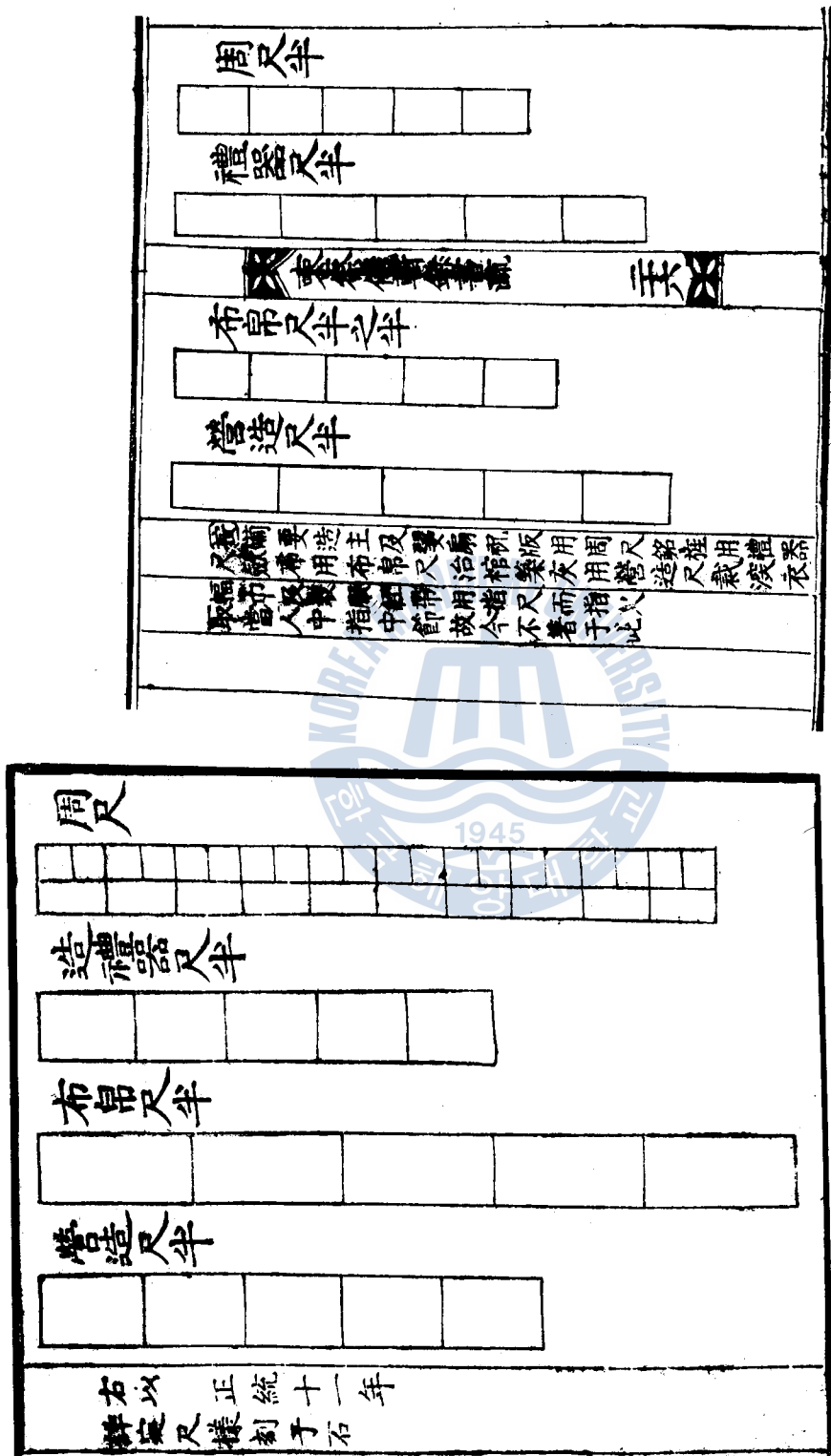
1. 高橋 正: 度量衡衍義(日語版), p.48(1922).
2. 全相運: 韓國科學技術史, 正音社, p.148(1979).
3. 高麗史, 食貨志, 東亞大學校, 7卷, p.135, 305(1971).
4. 高麗史, 刑法志, 東亞大學校 7卷, p.296, 586(1971).
5. 李定求: 四千年文獻通考, 東明社, p.101(1927).
6. 前掲書(2), p.150.
7. 前掲書(2), p.152.
8. 前掲書(1), p.50.
9. 前掲書(1), p.51~52.
10. 朴興秀: 李朝尺度에 관한 研究, 大東文化研究 4, p.199~226(1967).
11. 朴興秀: 李朝尺度 基準으로서의 現水標의 價値, 科學技術研究 3, p.1~11(1975).
12. 朴興秀: 李朝尺度 標準에 관한 考察, 素岩 李東植先生華甲記念 論文集, p.281~293(1981).
13. 經國大典, 一志社, p.505~506, 709(1979).
14. 喪禮備要 圖篇, 金長生撰, p.20, 北漢太白寺藏板(1620).
15. 四禮便覽, 卷之5, 喪禮 喪圖二, 高宗10年(1844).
16. 丘濬: 朱子家禮, 卷上, 家禮圖, p.15(明代).
17. 胡廣等: 性理學大全書, 卷之18, 家禮 1, p.17, 永樂 13(1414)年 御製序.
18. 喪禮儀輯錄, 書疏式篇, p.26, 作者. 發行年代 未詳.
19. 增補四禮便覽, 卷之五, 喪禮, 喪圖三, 書業堂藏板 光武 4(1900)年.
20. 前掲書(1), p.53.
21. 柳子厚: 朝鮮貨幣考, 現文社, p.680~683(1940).
22. 前掲書(1), p.54.
23. 世宗實錄(第113卷), 世宗大王記念事業會, 18卷, p.18, 75(1972).
24. 續大典, 法制處, p.324, 473(1965).
25. 前掲書(1), p.59.
26. 前掲書(1), p.102.
27. 前掲書(1), p.57.
28. 前掲書(1), p.58.
29. 玉野·水泉: 度量衡, 世界大百科事典, 16卷, p.667, 平凡社(1969).
30. 大韓造幣公社, 韓國貨幣全史, p.55, 84, 89~108(1971).
31. 前掲書(5), p.100~101.
32. 前掲書(5), p.102.
33. 大典會通 解題(日語版), 中樞院(朝鮮總督府), p.76, 77(1939).
34. 尹商鉉: 朝鮮五百年史, 光東書局, p.39(1928).



寫 2. 性理大全書 圖尺 (1/2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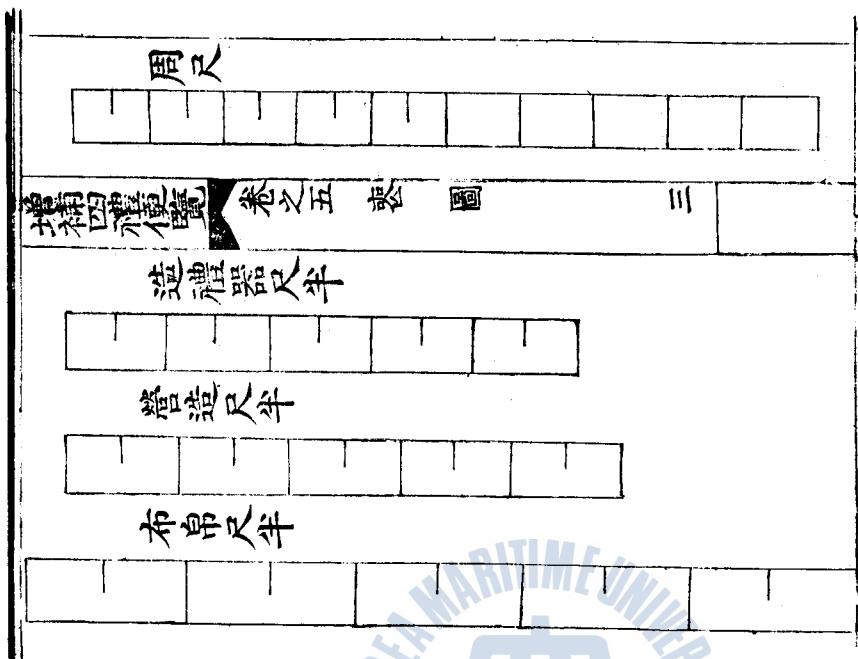
寫 1. 朱子家禮 圖尺 (1/2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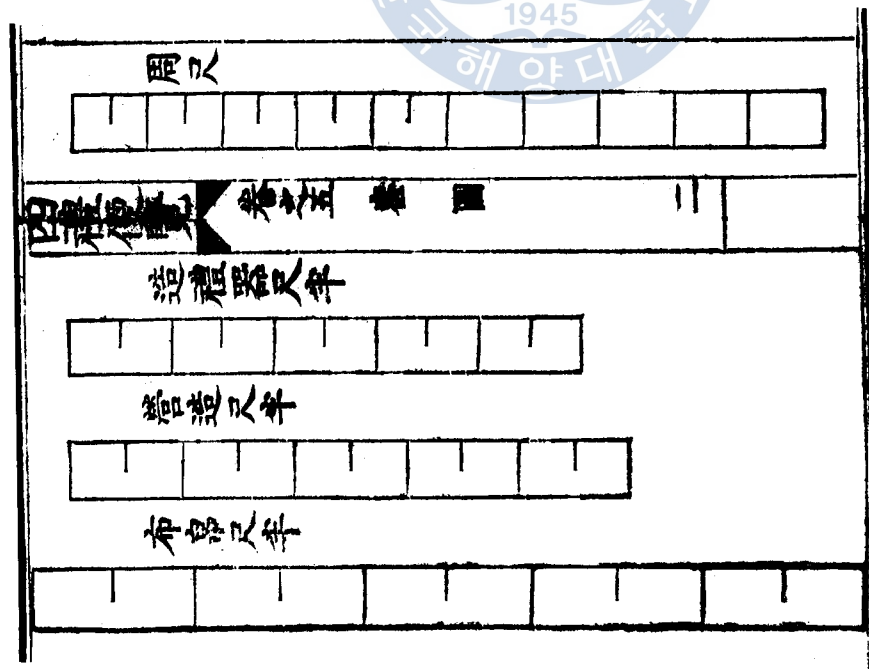
寫 4. 喪祭儀輯錄 圖尺 (1/2縮圖)

寫 3. 喪禮備要 圖尺 (1/2縮圖)





寫 6. 增補四禮便覽 圖尺 (1/2縮圖)



寫 5. 四禮便覽 圖尺 (1/2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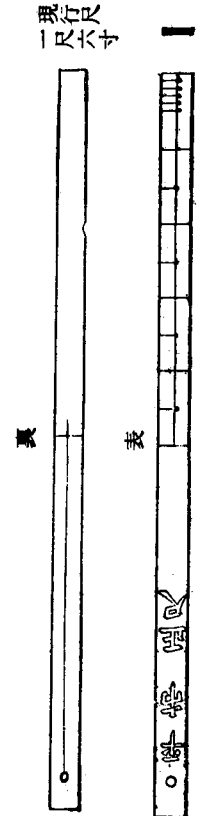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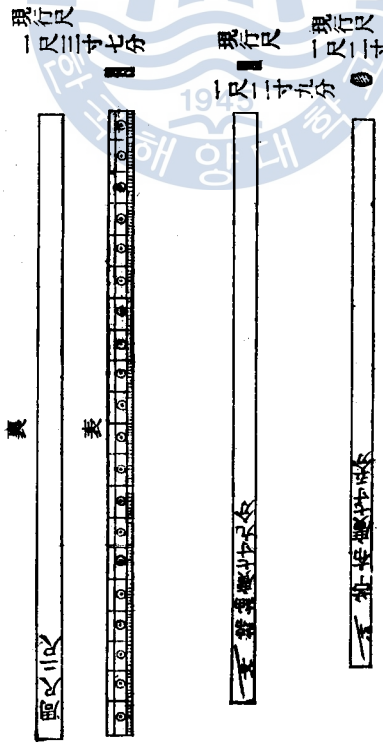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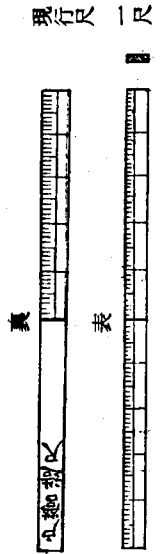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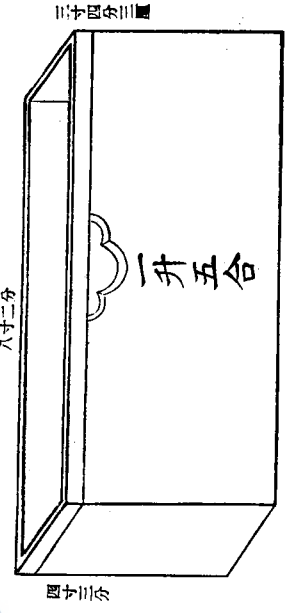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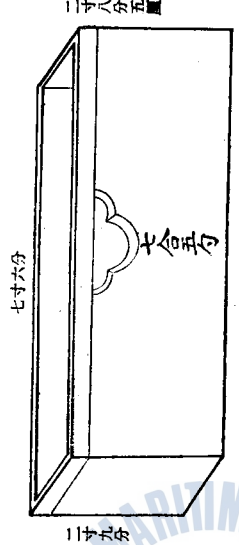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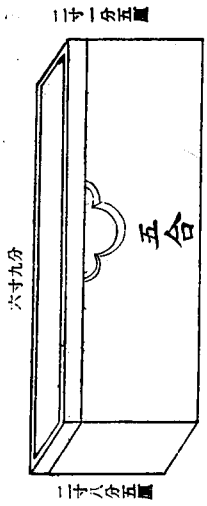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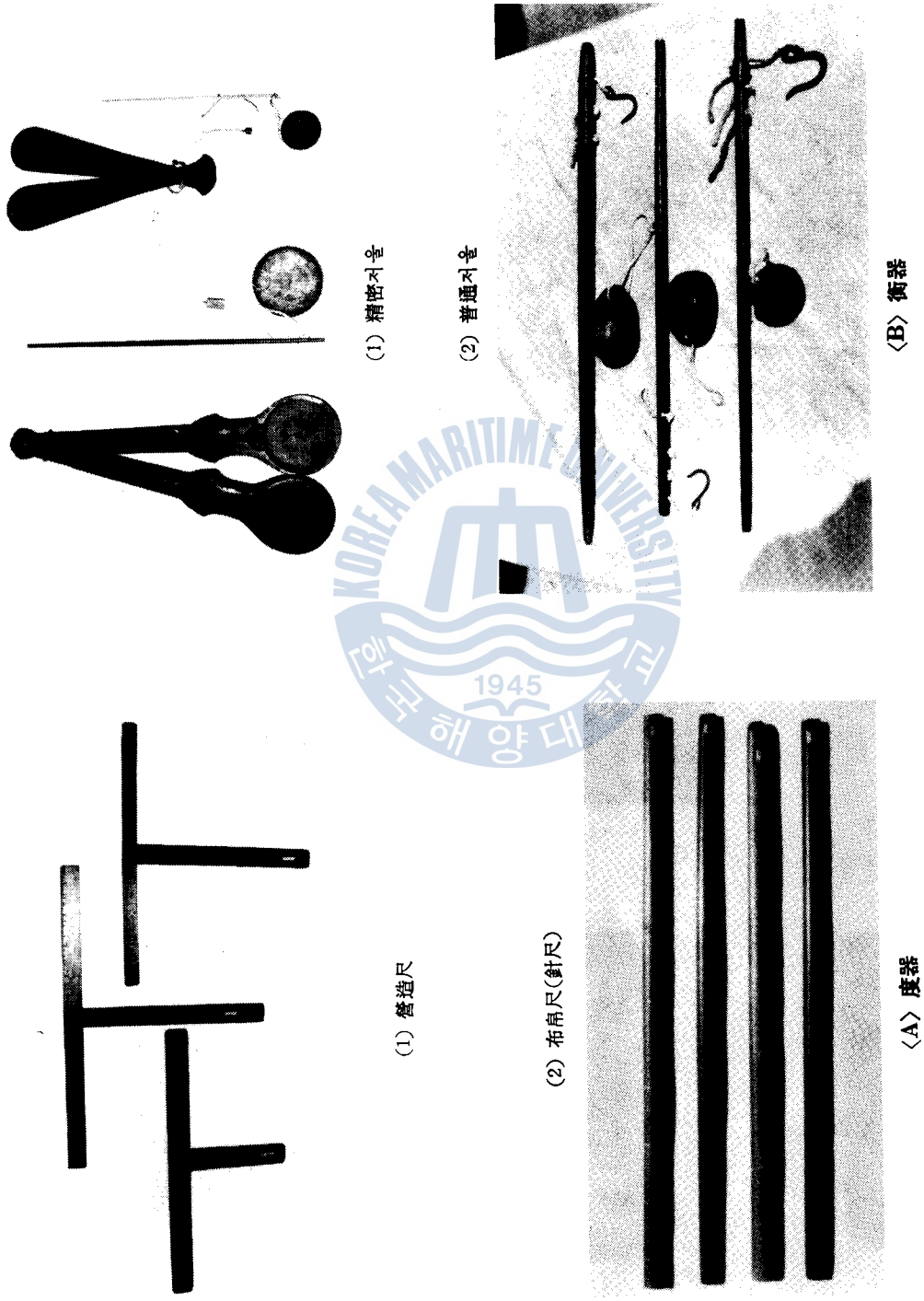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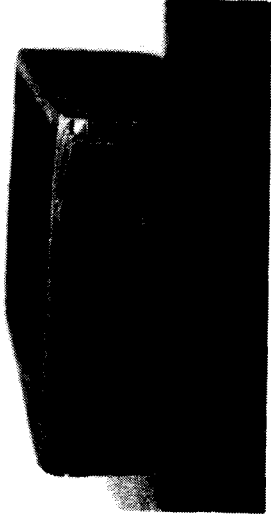


圖 8. 度量衡衍義平式院容器

圖 7. 度量衡衍義圖尺 (1/2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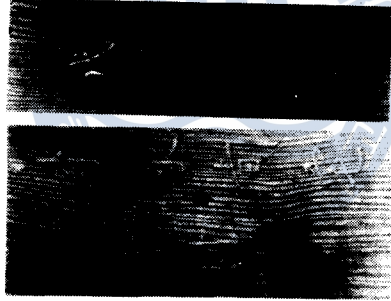


寫 9. 朝鮮代度量衡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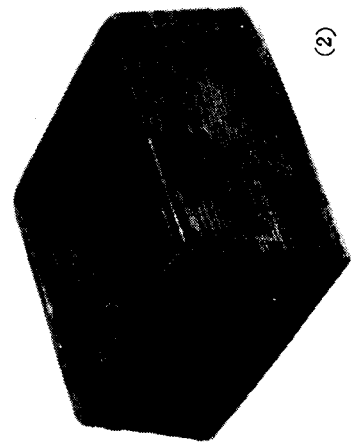
(1) 五合量器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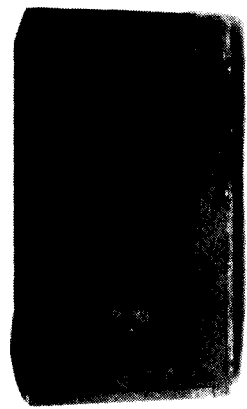


(2) 七合五勺量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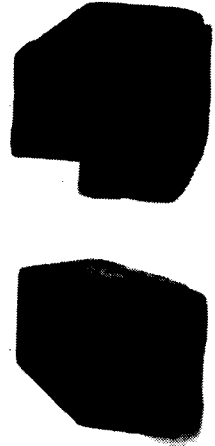
〈E〉從前法  
半斗量器



(2)



(3) 一升五合量器  
〈C〉從前法量器



(1)

〈D〉高宗代 1升量器

(2)

〈半斗量器(2)의 陰利〉

寫 9. 朝鮮代度量衡器(2)